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. 11. 30 선고 2022가단131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봉환

변 론 종 결 2022. 11. 16.

판 결 선 고 2022. 11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1995. 3. 17. 접수 제11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별지 목록 기재 토지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는 원고의 부 망 C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이 1945. 4. 25. 전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1987. 9. 29. 사망시까지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 장남인 원고에게 상속하여 주었다.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, 피고는 1995. 3. 17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다.

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(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19571 판결 참조, 2000. 9. 5. 선고 2000다27268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. 3. 17.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된다.

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,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(원고는 2022. 10. 19.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경훈

목 록

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전 489㎡, 끝.

